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우 석 고 등 학 교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 기초조사 및 분석

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한다.

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설 프로그램 선정 및 기초 자료 준비한다.

2. 방과후학교 활동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가. 운영 메뉴얼을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3. 개설 프로그램 결정

가.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인성·창의성·특기 계발 등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의 사정과 운영에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개설·운영한다.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책정,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개설 프로그램 운영

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강료는 학생의 희망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한 계획, 편성, 운영내용 등 수시로 자체 평가하여 환류한다.

다. 수강료 납부 방법은 수납행정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스쿨뱅킹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라. 학습교재는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 여건에 따라 교과협의회에서 학습교재를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마. 수준별 심화·보충특강의 전반적인 사항-강좌, 담당 교사, 수강료, 운영 방식 등은 학년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5.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

- 1) 1학기 (2023. 03. 13. ~ 06. 30.)
- 2) 2학기 (2023. 08. 07. ~ 11. 30.)
- 3) 겨울방학(2024. 01. 08 ~ 2024. 02. 23.)

나. 교육시간

- 1) 매주 월, 화, 수, 목, 금(16:30 ~ 17:30)
- 2) 방학 중(09:00 ~ 12:00)

다. 수강료: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50분 기준 강사료 3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10분당 강사료 7600원을 환산하여 60분 기준 45600원으로 참여 인원내 따라 추후 확정한다.

라. 개설 프로그램

- 1)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특기적성(예체능)
- 2)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특기적성(예체능)
- 3)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특기적성(예체능)

6. 방과후학교 교재

가. 학습교재는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 여건에 따라 교과협의회에서 학습교재를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나.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 1학년 수학교과외의 경우 방학중 방과후학습에서 다음 학기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 교육혁신과-13948 (2016. 6. 23.) 2016학년도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습 운영 안내

7. 방과 후 학교 지도교사 결·보강처리

- 1) 출장 및 기타사유로 결강이 발생했을 경우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강을 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동일교과 교사 또는 수학능력고사 교과목 교사의 보강을 실시 할 수 있다.
- 2) 출장 등으로 결강이 발생했을 경우 지도교사는 결·보강계획서 작성하여 날인 후 방과 후 학교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II. 회계 관리

1. 회계 원칙

가. 모든 회계는 「국·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며,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나.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등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2. 수강료

가.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행정실 출납원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강료 정보를 제공한다.

라.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3. 강사료

가.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

나. 소속 교원이 강사로 활동할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고, 타교 현직 교원 또는 타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시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 담임(담당)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강사료를 받을 수 없다.

라. 외부강사는 사업 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 징수한다.

4. 수용비

가. 학교시설 신·증축 등 환경개선 사업 및 학교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수용비를 사용할 수 없다.

나.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문자 서비스(SMS)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기타 관리수당 등 인건비성 항목은 지출 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부 지원계획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원 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도

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등에 지원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은 방과후학교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

- 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해당 학교, 타교, 공공 기관의 방과후학교에 활용할 수 있다.
- 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월 지원 금액 및 참여 프로그램 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규모 있게 예산을 운용한다.

6. 정산

가. 수익자부담 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강료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환불 규정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다.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수강료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은 본교의 환불 규정에 따른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담당교사 개인이나 학교 사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본교의 각 회차별 기준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환불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학습자가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본인의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IV. 평가 및 환류

1. 평가 및 환류

- 가. 방과후학교에 관한 내용, 방법 등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나.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V.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

1. 목적 :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참여학생 관리 및 보호

2. 기본 방향

- 안전사고 예방
-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 교육 활동 안전 확보
- 학생 관리 및 지도

3. 학생 안전관리 실제

- 교직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학생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교내·외 수시 순찰
-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관리 및 하교지도
- 교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지도
- 학생인솔 시 방과후학교 강사 동행
- 교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실시
- 고위험학생(폭력, 중독, 가출), 위기학생 파악 및 생활지도
-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 기타 안전사고 대비 여부